

세무조사자들의 회계정보 활용과 과세재량권

Taxation Discretion and Account Information Application of Tax Investigator

홍순복

동명대학교 경영학부 경영학과

Soon-Bok Hong(hong6601@hanmail.net)

요약

본 연구는 세무행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세무조사자들이 세무조사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의사결정시에 회계정보와 비회계정보를 어느 정도 활용하는지를 분석하고, 조사자들의 직무수행에 관련한 직무요인이 과세재량권의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한 연구이다. 검증결과, 회계정보는 재무제표 중 손익계산서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준비조사단계에서 검토하는 자료 중에서는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회계정보는 질서문란행위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재량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법적,제도적인 직무수행에 대한 전문가의식과 직무환경요인이 재량권의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무수행 시 전문가의식이 높을수록, 직무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과세재량권의 활용에 역(-)의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중심어 : | 세무조사 | 회계정보 | 비회계정보 | 과세재량권 |

Abstract

This study is to analysis the application statue of account and non-account information of the tax investigators, who are charging significant roles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of the tax investigation and to verify whether work factors, regarding work performance, affect on the application of the taxation discretion. Following to verified results of the study, tax investigators apply the income statement most frequently and significantly consider the financial statement with annexed specification from the data to expedite an efficient tax investigation. In a selection of non-account information, work group preferentially considers the disorder of job performance. The analysis of primary factor embodies that the professionalism, regarding legal or institutional work performance, and the working environment intimately effect on the tax discretion application.

■ keyword : | Tax Investigation | Account Information | Non-Account Information | Taxation Discretion |

I. 서론

세무조사는 국가의 공권력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자기의 부담능력에 따라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사후검증하고 그 잘못을 시정함으로써 성실한 자진신고납부를 유도함과 동시에 이를 통하여

세 부담의 공평성을 확보하는 등 조세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과세관청에 부여된 고유의 권한이다. 기업은 정기적으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어 있으며, 세무조사의 운영에 있어서 조세를 되도록 회피 혹은 경감시키려는 납세자들의 욕구와 세수를 확보하려는 세정당국의 노력 사이에서는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 이에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세무조사운영준칙」을 국세청훈령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세무조사를 전문화할 목적으로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과 조직을 만들어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조사과내에 특정 업종을 전문으로 맡는 팀을 구성하여 기능별로 전문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세무조사에 관한 연구는 주로 조세회피(tax avoidance)연구 그리고 납세성실도(tax compliance)연구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주로 세무조사가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요인, 또는 납세성실도를 높일 수 있는 요인의 측면에서 연구되어 왔으며[2][3][5], 세무조사확률 또는 적발능력을 높일수록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납세성실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결론이 일반적이었다. 최영곤(1996)의 연구에서 세법준수성은 납세의무자, 세무전문가, 그리고 세무당국간의 상호작용의 산물이므로, 납세의무자, 세무전문가뿐만 아니라 세무당국도 연구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즉 과세당국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본 연구는 세무조사자들의 세무조사업무수행과정에서 의사결정시에 회계정보와 비회계정보를 어느 정도 활용하는지를 분석해보고, 조사자들의 업무수행에 관련한 직무요인이 과세재량권의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한 연구이다. 현재까지 관련연구들은 주로 납세자 또는 기업의 회계담당자들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나, 세무조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하겠다.

II. 이론적 배경

1. 세무조사

우리나라 과세당국은 기업의 납세관리를 위해 나름대로 체계적이고, 전산화된 방법을 이용하여, 신고 성실

도의 전산분석결과와 미조사기간 그리고 세원관리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의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선정하며 이중 납세성실도가 낮은 기업을 우선적인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선정된 기업은 지방국세청과 세무관서의 전산실을 통해 하달되고 있으며, 일선 세무관서에서는 하달된 내용을 참고로 최종적으로 조사대상기업을 선정한다. 선정된 법인의 제출신고서 및 보고서를 이용하여 평가요소를 선정하고, 그 요소는 주로 재무비율로 표현되며, 재무비율을 이용하여 납세성실도와 기업의 건전도를 평가하여 조사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일선 해당관서에서는 실무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현실에 맞게 합리적이고 탄력적으로 조정가능 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 하고 있다. 세무조사단계에서 세무조사자들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활용되는 여러가지 정보 집합 중에서 회계정보는 조사대상기업의 고유한 정보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는 정보임을 시사하고 있다[1][4].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세무조사자들이 어떤 회계정보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검증을 한 것에 대해서는 연구가 없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조사자가 실제 어떤 정보를 어느 정도 활용하는가를 분석 검증하는 것은 직접적인 검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세무조사자들이 세무조사 시 활용하는 정보의 집합 중에서 회계정보와 비회계정보가 어느 정도 활용되는지를 확인하여 정보의 유용성을 결정하는 변수들을 밝힘으로써 회계정보의 유용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직접적으로 검증하는 연구이다.

2. 과세재량권

적정한 재량의 행사란 충분하여야 하고, 합리적이어야 하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재량수권의 목적에 합치하여야 하며,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이 고려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요건들을 고려하지 않은 재량권행사를 총칭하여 재량권의 남용이라 한다[7][8]. 세무조사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의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자 또는 당해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장부·

서류·기타 물건을 검사하고 조사·확인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세무조사활동은 투명하고 과학적·합리적이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최소화되는 기준을 준수하는 활동이어야 한다. 재량권의 행사에 있어서 재량의 행위 기준이 명확하면 그 만큼 자의적인 재량권의 행사에 대한 위험성이 감소될 것이다.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납세자는 그 수단으로 매출기록을 위조하거나 비용을 부풀리거나, 재고자산의 평가손실을 과장하거나, 불법적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구입하여 매출원가를 증가시키는 방법을 이용하며 세무공무원은 재량권을 활용하여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공무원이 재량권을 활용하여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면 그 재량권의 크기는 시장구조와 관련하여 경쟁시장보다는 독과점시장에서 증대되는 경향이 있고 납세자와 공무원의 접촉빈도를 줄였을 때 감소한다고 하였다[12][13]. 세무분야의 부정에 관해서는 부분적인 세무부정 유발요인들에 대해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는데 세무부정은 세무공무원의 급여가 낮을 때 발생하며, 세무공무원에게 부과되는 벌칙수준이 낮을 때 높아지고 적발확률이 높을 때 낮아진다고 하였다[11].

3. 직무요인

3.1 직무환경

직무환경이란 일 그 자체를 포함하여 보수, 승진, 교육훈련의 기회 등 각종 인사제도와 근무여건을 말하며, 세무조사자들은 다른 직렬과 거의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신분보장의 측면에서 담당 업무의 중요성과 전문직이라는 느낌 때문에 다른 직렬에 비해 안정적인 것이라 예상하기 쉬우나, 1998년 지방자치단체들의 구조조정 결과 전국적으로 12,052명이던 정원이 10,634명으로 감축됨으로써 결코 유리한 여건으로 볼 수 없게 되었다. 세무조사자들은 세수 확보를 위한 세금을 부과 징수하고 세무자료를 수집, 활용하며 세금에 대한 상담 등을 주 기능으로 한다. 또한 다른 직종에 비해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며¹⁾ 교육훈련은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연마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능력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활동을 말한다[8].

3.2 전문가의식

세무직은 지방세정의 전문화 제고를 위해 신설된 제도이므로 업무의 성격 뿐 아니라 보직이동이나 교육 훈련 등에 있어 일반직과 다르다. 따라서 다양한 교육의 기회와 직렬내에서의 보직이동 등을 잘 활용할 경우 실무의 노하우를 조직의 생산성 증진에 활용할 수 있다. 전문가정신은 전문가다운 판단력과 책임성을 포함한 정직의 기준, 공직윤리, 객관성을 의미한다[9]. 오늘날의 전문가는 전문가집단으로서 전문지식을 갖추는 것은 물론 그 활용능력도 견비해야 하며, 동시에 전문가 집단의 일환으로서 집단규범도 지켜야 한다. 공무원의 전문가 의식도 채용 후 재직기간 중 이수하는 전문교육 과정을 통해 배양되기 때문이다[10]. 전문가정신을 확대 해석할 경우 공직윤리의 개념과 중복되는데 이는 전문가적 윤리(professional ethics)라고 하며 양자를 구별하기는 매우 어렵다. 공직윤리는 조사자 및 세무공무원을 지배하는 윤리적 규범을 뜻하는 것으로 과거의 부정 부패방지라는 윤리성 뿐 아니라 공익성, 봉사정신, 판단력, 전문지식 및 전문가적 책임성까지도 의미한다[6]. 본 연구에서는 규범적 측면 즉, 책임성, 대응성, 봉사정신 그리고 전문가 정신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3.3 조사준비수준

납세자는 세무조사의 조사유형에 따라 그 강도가 다르지만 부분 사전조사 예고통지를 받게 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세무조사요원 역시 조사에 임하기 전에 사업전반과 영업형태, 실적, 세금납부 상황, 개인생활정도, 재산사항, 해외여행 빈도 등을 상세히 조사하고 준비하기 때문이다. 예상되는 조사의 방향과 요구자료 등을 분석하여 답변 자료를 미리 준비하고 사업장에는 조사와 관련 없는 것은 정리하여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도록 노력하여야 하는데 조사준비수준이란 이처럼 조사자가 조사업무 수행 시 납세자들의 조사에 응하는 준비수준을 말한다. 오늘날처럼 세

1) 각 지방자치단체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세무행정반 교육,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지방세수 조사 및 지방세정 전문요원교육과정, 행정자치부주관 과표 교육 등

무관련 내부환경의 변화가 급격한 상황에서는 내부지향적인 세무관리만으로는 효율적인 세무관리가 어려우므로 세무관련 외부환경의 변화에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노력이 있어야한다. 경영자의 의사결정이나 관리자의 세무관리방향에 따라 세금부담의 차이가 나므로, 집행적 결정부서에 종사하는 관리자는 풍부한 기획력과 세무지식을 가진 자로 구성하여 세무관리의 방향을 결정하여야 하며, 조세법규 등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세무관리전담자를 지정하거나,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등 외부협력자를 선정하여 단순히 조세최소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관리를 전반적인 경영의사결정의 일부로 인식하여 세무에 대한 전반적인 준비수준을 높이는 것이 세무관리전략으로서 효율적인 세무관리가 될 것이다. 이상에서 직무요인들은 세무조사자들이 조사업무를 수행 시 과세재량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II. 자료의 특성

자료 수집을 위해 설문지(questionnaire)를 이용하였으며, 부산·경남지역의 국세청과 일선세무서에서 근무하는 세무조사자들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설문항목의 구성은 세무조사 시 판단의 기준과 고려하는 항목 그리고 회계정보와 비회계정보의 활용정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다. 설문지의 측정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로 '매우높다' 또는 '매우 많이 활용'의 경우에는 5점으로, '매우낮다' 또는 '전혀 활용 않음'의 경우는 1점으로 표시하도록 하였고, 기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각 문항에 적합하게 체크하도록 하였다. 부산·경남지역의 세무조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2005년 11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3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232개의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나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다수의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40부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192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IV. 분석결과

1. 자료의 인구통계적 특성과 분석방법

설문지의 회수율은 82.7%였으며 분포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1. 세무조사자들의 인구통계적 특성

변수	집단	빈도수	비율(%)
학 렳	고졸	42	21.9
	대졸	139	72.4
	대학원졸	11	5.7
연 령	20대	18	9.4
	30대	116	60.4
	40대	53	27.6
	50대	5	2.6
조사업무	법인부가세	98	51.0
	소득부가세	70	36.5
	재산세	24	12.5
조사업무 경력	5년 미만	30	15.6
	5~10년	50	26.0
	10~15년	49	25.5
	15~20년	29	15.1
	20년 이상	34	17.7
법인조사 경력	1회	40	37.0
	2회	30	27.8
	3회	18	16.7
	4회	18	16.7
	5회 이상	2	1.9
개인조사 경력	1회	50	30.9
	2회	44	27.2
	3회	40	24.7
	4회	20	12.3
	5회 이상	8	4.9
대기업세 무조사경험	있다	109	56.8
	없다	81	42.2
근무처	지방 국세청	48	25.0
	세무서	144	75.0
합 계		192	100

수집된 자료는 SPSS/Window Ver 12.0을 이용하여 세무조사자들이 세무조사업무수행 시 회계정보의 고려 정도에 대한 중요도 분석을 위하여 캔달의 순위검정을 이용하였으며, 구성개념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주축요인 추출과 직교회전방법인 Varimax Rotation을 이용한 요인분석을 수행하여 세무조사자들의 직무관련 요인이 과세재량권의 활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였다.

2. 회계정보고려의 순위검정결과

본 연구는 세무조사과정에서 조사자들이 회계정보가 유용한지 또 유용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의사결정상황에서 회계정보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세무조사자들 중에서 구체적인 표본을 추출하여 이들이 조사업무수행의 의사결정에 어떤 회계정보를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는 조사자들의 세무조사에 있어서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직접적으로 검정하는 연구가 될 것이다.

표 2. 재무제표의 중요성인식도 순위검정결과

재무제표종류	평균	표준 편차	평균 순위	순위
대차대조표	3.77	0.755	3.29	2
손익계산서	3.94	0.686	3.53	1
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결손금처리 계산서	3.34	.864	2.53	5
현금흐름표	3.67	.916	3.11	3
주석사항	3.38	.833	2.55	4
검정통계량(n=192):Kendall의W(일치계수)=0.152,카이제곱=115.034,자유도=4,근사유의확률=0.000				

5. 매우 많이 활용 4. 많이 활용 3. 보통 활용 2. 약간활용
1. 전혀 활용 없음

세무조사 시 재무제표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정도와 본 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전조사 시에 검토하는 자료들 중에서 중요도에 대한 인식정도를 순위별로 파악하기 위하여 칸달의 순위검정을 실시하였다. [표 2]의 검정결과, 세무조사자들의 세무조사과정에서 재무제표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손익계산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대차대조표, 현금흐름표, 주석사항 그리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결손금처리계산서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본 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준비조사단계에서 세무조사의 착수에 앞서 수집 및 활용 가능한 자료를 분석 검토하는 자료의 인식정도를 순위별로 검정한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준비조사단계의 중요성인식도 순위검정결과

준비조사단계시 검토자료	평균	표준 편차	평균 순위	순위
기본적인 신고상황	3.79	.747	4.60	3
법인세신고과세표준 및 세액계산내용	3.67	.743	4.24	7
세무조정부속명세서	3.82	.668	4.66	2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3.99	.684	5.19	1
자본금증감사항 및 주요주주주식변동상황	3.79	.756	4.52	4
경정결의서 및 과세자료	3.71	.726	4.34	6
기업과세정보(인터넷검색, 언론보도)자료	3.60	.836	4.09	8
감사보고서 및 결합재무제표	3.70	.763	4.37	5
검정통계량(n=192):Kendall의W(일치계수)=0.42,카이제곱=55.255,자유도=7,근사유의확률=0.000				

5. 매우 많이 활용 4. 많이 활용 3. 보통 활용 2. 약간활용
1. 전혀 활용 없음

준비조사단계에서 세무조사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항목으로는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인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세무조정부속명세서와 기본적인 신고상황, 자본금증감사항 및 주요 주주 주식변동 상황, 감사보고서 및 결합재무제표, 경정결의서 및 과세자료, 법인세신고과세표준 및 세액계산내용, 기업과세정보(인터넷검색, 언론보도)자료의 순으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비회계정보 고려의 순위검정결과

세무조사시 조사자들이 의사결정에 있어서 활용되는 회계정보는 조사대상 기업의 고유한 정보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정보이므로 이러한 회계정보와 더불어 비회계정보는 대체적인 정보원으로서 상호 보완적인 정보원이라 할 수 있다. Buzby(1974)는 정보시장의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 의사결정에 어떤 정보들이 중요시되는지를 검정하기 위하여 정보항목으로 경제전반적인 정보와 산업정보 그리고 회계정보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표 4. 비회계정보의 중요도 인식순위검정결과

비회계정보	평균	표준 편차	평균 순위	순위
탈세이력	3.52	.882	4.30	10
대규모실물투기	3.86	.831	5.47	6
고액사채거래	3.75	.887	5.16	7
변칙상속증여	4.04	.695	6.26	2
지탄대상경제생활자	3.91	.741	5.69	3
질서문란행위	4.30	.761	7.07	1
국제탈세행위	3.61	.938	4.71	9
해외불법재산도피행위	3.70	.946	5.09	8
조세채권면탈행위	3.85	.848	5.59	5
상습 또는 신종탈세행위	3.90	.767	5.64	4
검정통계량(n=192):Kendall의W(일치계수)=0.113, 카이제곱=193.618,자유도=9,근사유의확률=0.000				

5. 매우 많이 활용 4. 많이 활용 3. 보통 활용 2. 약간활용
1. 전혀 활용 없음

허성관과 정재위(1999)는 자본시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사결정 시 회계정보와 비회계정보를 어느 정도 활용하는 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세무조사자들을 대상으로 비회계정보 문항을 수정하여 활용정도를 순위별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회계정보의 활용이 많을수록 여타의 정보 집합인 비회계정보를 많이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회계정보의 고려정도에 대해 Kendall의 순위검정을 실시한 분석결과는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다. 세무조사수행 시 비회계정보에 대해서는 질서문란행위를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다음으로는 변칙상속증여와 지탄대상경제생활자, 상습 또는 신종탈세행위, 조세채권면탈행위, 대규모실물투기, 고액사채거래, 해외불법재산도피행위, 국제탈세행위 그리고 탈세이력의 순으로 인식하고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자료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본 연구는 세무조사자들의 직무요인이 재량권의 활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기위하여 Cronbach's α 로 내적일관성에 의한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신뢰성 검정결과 0.6이상으로 측정도구의 신뢰도에 문제가 없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조사하고 있는 개념을 정확히 측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타당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타당성이란 측정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측정차원을 얼마나 정확히 측정하고 있는가의 정도를 말하는 것이다. 요인적재치의 단순화를 위해 직교회전(varimax rotation)방법을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16개의 항목을 사용하였다. 요인의 추출은 고유값(eigenvalue)이 1이상인 것을 선택하였는데, 최종요인은 4개가 추출되었다. 변수의 쌍들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KMO 측도는 .743으로 적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요인분석의 적합성여부를 나타내는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에서 검정치는 1076.934이며 유의수준 .000으로 본 연구에서 요인분석의 사용이 적합한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다. 조사자들의 직무활동과 재량권에 대한 요인분석의 결과는 [표 5]에 나타나있으며 고유값은 1.635이상이며, 4개 요인이 전체변량의 61.389%를 설명하고 있다. 추출된 4개의 요인에 대해서는 각각 전문가의식, 직무환경, 재량권활용, 조사준비수준으로 명명하였다. 요인적재치는 최소 .572 이상으로 각 요인의 10.220%이상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구성개념의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5. 요인분석결과

변수문항	연구변수				공통성	Cronbach's α 계수
	전문가 의식	직무 환경	재량 권 활용	조사 준비 수준		
조사업무능력 전문가적 지식능력 창의력발휘정도 적발가능능력	.829 .775 .772 .752				.636 .696 .641 .656	.813
보수수준만족 승진제도만족 신분보장만족 교육훈련기회만족 동료간업무협조만족		.765 .726 .607 .595 .576			.614 .577 .549 .534 .386	.726
과세인식시점재량권 법해석재량권 조사기법적용재량권			.869 .868 .795		.779 .774 .682	.840
조사준비상태 세무지식수준 납세성실수준 조사협조수준				.811 .794 .728 .572	.661 .641 .543 .553	.655
고유값(eigen value) 설명변량(%) 누적백분율(%)	4.190 26.18 26.18	2.207 13.79 39.98	1.790 11.18 51.16	1.635 10.22 61.38		

5. 다중공선성의 검토

[표 6]은 재량권활용과 직무요인 척도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전문가의식은 직무환경에서 $r=.343$ 으로 직무환경이 좋을수록 전문가의식이 높은 정(+)의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재량권활용의 경우는 $r=-.266$ 으로 부의 상관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조사업무수행 시 전문가의식이 높을수록 재량권의 활용의 정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재량권의 활용에 대한 직무환경에서 근무여건에 만족할수록 재량권의 활용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r=-.294$ 로 나타나 부(-)의 상관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량권활용에 대한 직무환경에서 $r=-.294$ 와 전문가의식에서 $r=-.266$ 으로서 근무환경에 만족하고 전문가의식이 높을수록 재량권활용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내는 부(-)의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표 6. 측정변수 상호간의 상관관계

구 분	전문가의식	직무환경	재량권활용	조사준비수준
전문가의식	1.000			
직무환경	.343**	1.000		
재량권활용	-.266**	-.294**	1.000	
조사준비수준	.099	-.064	-.053	1.000
평균	3.540	4.320	3.501	2.909
표준편차	.6611	.4803	.5395	.4948

$p<0.05^*$, $p<0.01^{**}$

6. 회귀분석결과

본 연구는 세무조사자들의 전문가의식, 직무환경, 조사준비수준 요인들이 세무조사 시 재량권의 활용범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검증결과, 직무활동요인 중에서 전문가의식과 직무환경이 $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고, 조사준비수준에 대해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 가지 변수가 재량권의 활용도에 미치는 영향의 설명력은 16.8%로 나타났으며 회귀방정식에서 $F=12.408$ 에서 0.0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 따라서 세무조사자들이 직무수행 시 재량권의 활용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직무활동요인 중 전문가의식($b=-.213$, $p=.000$)과 직무환경($b=-.188$, $p<.000$)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수들의 유의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영향의 정도는 회귀계수를 표준화한 Beta값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는데, Beta값의 절대치가 클수록 상대적 중요도가 높다고 말할 수 있다. Beta값에 의한 회귀방정식은 전문가의식($\beta=-.294$), 직무환경($\beta=-.208$)의 순으로 설명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직무활동요인의 모든 회귀계수인 b의 부호가 음(-)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직무수행 시 재량권의 활용에 대해 역(-)의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직무수행 시 전문가의식이 높을수록 재량권을 활용하는 경우가 낮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임금수준의 현실화로 인한 세무조사자들의 의식수준과 윤리수준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직무환경의 회귀계수인 b의 부호도 음(-)으로 나타나 역시 직무환경에 만족도가 높을수록 재량권의 활용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사준비수준에 대해서는 회귀계수가 양(+)으로 나타나 조사준비수준이 높을수록 재량권의 활용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세무조사자들이 직무수행 시 전문가의식이 높을수록, 직무환경에 만족할수록 재량권을 활용하는 경우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7. 직무요인과 재량권활용에 대한 회귀분석

구 분	재량권 활용					
	회귀계수	표준화계수	t값	유의수준	공차한계	VIF
전문가의식	-.213	-.294	-4.176	.000***	.910	1.099
직무환경	-.188	-.208	-2.976	.003***	.917	1.091
조사준비수준	.080	.083	1.223	.223	.985	1.015
F값	12.408					
유의수준	0.000***					
설명력(R ²)	0.168					

$p<0.05^*$, $p<0.01^{***}$

V. 결 론

세무조사의 목적은 기업의 자율적인 성실신고를 담보하고 기업경영의 건전화를 유도하는데 있으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선정된 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세무행정의 핵심역할을 담당하는 세무조사자는 세무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공정하게 행동하여야 하며, 사회적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세무조사자들의 세무조사업무의 수행과정에서 회계정보와 비회계정보에 대한 중요도의 인식 정도를 파악하여 이를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 활용하는지를 분석하였고, 조사자들의 업무수행에 관련한 직무요인이 과세재량권의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세무행정에 대한 사회공동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세무조사자들의 행동강령(codes of conduct) 및 사익과 공익의 이해충돌을 조정하는 규칙(rules on conflict of interest)의 기준이 설정되고 강화되면서 근무환경이 개선되고 전문가의식에 따른 자부심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방법으로 세법을 집행할 수 있는 지속적인 세무공무원의 직무환경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설문조사 시 재량권의 활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을 직무요인항목을 인위적인 몇 가지 항목으로 제한된 점과 자료의 수집을 부산과 경남지역에 근무하는 세무조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은 연구결과와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와 한계를 감안하여 조사자들의 과세재량권의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1] 권찬태, 안홍복, 남준태, “우리나라의 기관투자자와 외국기관투자자의 주식투자정보 중요성 인식에 관한 실태분석”, 회계저널, 제22호, pp.163-190, 1996.

[2] 변용환, “납세자의 조세관”, 세무학연구, 제11호, pp.221-263, 1998.

[3] 전태영, 변용환, “국세행정의 평가요인”, 세무학연구, 제18권, 제3호, pp.59-89, 2002.

[4] 허성관, 정재위, “기관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과 회계정보”, 회계정보연구, 제11호, pp.61-78, 1999.

[5] 최영근, “납세의무자의 세법준수성 연구: 이론·문제점 및 발전방향”, 세무학연구, 제8호, pp.153-173, 1996.

[6]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 2006.

[7] B. Saha, “Harassment, corruption and tax policy: a comment on Marjit, Mukherjee and Mukherjee,”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19, pp.893-897, 2003.

[8] L. L. Jaffe, “Judicial Control of Administrative Action,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p.181, 1965.

[9] L. Caiden, “Public Service Professionalism for Performance Measurement and Evaluation,” Public Budgeting & Finance, Vol.18, pp.35-52, 1998.

[10] L. Pratchett and M. Wingfield, “The Demise of the Public Service Ethos. In Lawrence Pratchett & David Willson(eds.),” Local Democracy and Local Government, London: MacMillan Press, pp.106-126, 1990.

[11] N. U. Haque and R. Sahay, “Do Government Wage Cuts Close Budget Deficits? Costs of Corruption,” IMF Staff Papers, Vol.43, No.4, pp.754-778,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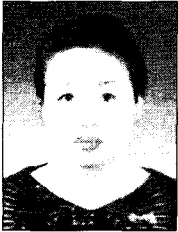
[12] S. L. Buzby, “Selected Items of Information and Their Disclosure in Annual Reports,” The Accounting Review, pp.423-447, 1974.

[13] S. R. Ackerman, “The Economics of Corruption,” Journal of Public Economics, pp.187-203, 1975.

저자 소개

홍 순 복(Soon-Bok Hong)

정회원



- 1995년 8월 : 동아대학교 회계학과 (경영학박사)
- 1997년 7월 ~ 1998년 8월 : University of Illinois (미국) 교환교수
- 1999년 8월 ~ 현재 : 동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관심분야> : 세무정보시스템, 회계정보, e-Biz